

9. 시상대상자 결정 :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(단, 공적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)
10. 수상자발표 :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('18. 9월초 예정)
11. 시상예정일 : 2020년 9월 10일(목) (※사정에 의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12. 기타사항
 - 첨부하는 공적조서(증빙서류)는 A4용지를 사용, 공적내용은 공고시점부터 최근 5년 이내 서울시에 기여한 실적만을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.
 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- 추천서 및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→분야별정보→주택)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(담당 : 유현선, 전화 : 2133-855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1836호

**도시관리계획(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-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**

1.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0년 6월 25일
서울특별시 장

- I. 열람 기간 : 2020. 6. 25. ~ 2020. 7. 9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- 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2팀 (☎02-2133-6294)
- III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 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	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중구 을지로6가 18-79 일대	669,072 (510.7)	-	669,072 (510.7)	서고시 제2015-116호 (2015.4.30)

※ 항목 중 ()의 숫자는 사업대상지(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외 7필지) 면적임.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669,072(510.7)	-	669,072(510.7)	100.0	

※ 항목 중 ()의 숫자는 사업대상지(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외 7필지) 면적임.

나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: 변경없음

적용지역	최대개발규모	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	비고
간선가로변	3,000㎡ 이하	•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	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필지 및 기계발지 제외
이면가로변	1,500㎡ 이하	• 특별계획구역	

※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발할 수 있음

나. 공동개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	적용대상	계획내용	비고
변경	공동개발(지정)	전지역	• 맹지, 부정형,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	결정도 참조
	공동개발(권장)		• 맹지, 부정형,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	결정도 참조
	자율적 공동개발		•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	

※ 금회 2013년 이후 현황을 반영한 공동개발(지정/권장) 조정, 결정도 참조

가구 및 공동개발

(1) 기정

가구번호	가구면적(㎡)	위치		필지면적(㎡)	비 고
		동명	지번		
2-10	7,741.7	광희동1가	163-2대	52.9	① 공동개발권장 : 163-1,163-2,163-3
			163-3대	66.1	

			163-1대	56.2	
			164-4대	3.3	
			165-2대	59.5	① 공동개발지정 : 164-4,165-2
			165-1대	56.2	② 공동개발권장 : 165-2,165-1
					①,② 공동개발권장
			164대	383.5	① 공동개발지정 : 164-3,179-2
			164-3대	11.4	② 공동개발권장 : 164,164-3
			179-2대	51.2	①,② 공동개발권장
			166대	188.5	-
			168대	82.6	
			170-1대	23.8	① 공동개발지정 : 168,170-1
			174-2대	13.9	② 공동개발권장 : 169,174-2
			169대	97.1	①,② 공동개발권장
			174대	134.5	-
			235-18도	10.2	-

※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

(2) 변경

가구번호	가구면적(㎡)	위치		필지면적(㎡)	비 고
		동명	지번		
2-10	7,741.7	광희동1가	163-3대	66.1	공동개발권장
			163-1대	56.2	
			164대	383.5	
			164-3대	11.4	① 공동개발지정 : 164-3,179-2 ② 공동개발권장 : 164,164-3 ①,② 공동개발권장
			179-2대	51.2	
			163-2대	52.9	
			164-4대	3.3	공동개발지정 ※ 169에서 169, 169-2, 169-3 으로 분할 ('20. 2. 24) 235-3에서 235-3, 235-30 으로 분할 ('15. 8. 5)
			165-2대	59.5	
			166대	188.5	
			168대	82.6	
			169대	85.8	
			170-1대	23.8	
			235-30대	14.3	
			174대	134.5	
			169-2대	1.0	① 공동개발권장 : 169-2,174-2,169-3
			169-3대	10.3	
			174-2대	13.9	
			235-18도	10.2	-

※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

□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비고
-	•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광희동1가 166일원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을 계획함 • 현재 필지현황(지적·지번·면적)을 반영하여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함
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불허용도 결정(변경)조서

(1) 기정

적용지역	위치	불허용도	비고
A 패션 도·소매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, 고시원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B 패션지원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C 도심관광·문화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D 간선변상업·업무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E 이면부 도심서비스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
(2) 변경

적용지역	위치	불허용도	비고
A 패션 도·소매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, 고시원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B 패션지원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C 도심관광·문화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D 간선변상업·업무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), 위락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E 이면부 도심서비스	전층	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)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F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	전층	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,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,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격리병원,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, 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 제외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교정 및 군사 시설, 발전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장례시설, 야영장 시설	※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
※ F(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) 지역은 기정 상 'E 이면부 도심서비스' 지역임

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비고
-	• 불허용도 변경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불허용도를 변경함 • 광희동1가 166 일원에 한함(결정도 참조)

2) 권장용도 결정조서

적용지역	위치	권장용도	비고
A 패션 도·소매	전층	•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체력단련장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), 판매시설(제임제공업 제외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	
B 패션지원	전층	•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체력단련장, 제조업소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	
C 도심관광·문화	전층	•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체력단련장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), 판매시설(제임제공업 제외),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 제외), 교육연구시설(학원, 직업훈련소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관광숙박시설	
D 간선변상업·업무	전층	•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체력단련장), 관광숙박시설, 업무시설(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, 사무소, 신문사)	
E 이면부 도심서비스	전층	• 공동주택(전용 60㎡ 미만),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체력단련장, 제조업소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), 교육연구시설(학원, 직업훈련소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관광숙박시설	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해당

※ 1) 전체 연면적의 40% 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.

2) 면적 산정시 주차장 및 1층 면적은 제외한다.

3)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” 적용

3) 1층 권장용도 결정조서

적용지역	1층 권장용도	비고
전지역	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제과점, 휴게음식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), 판매시설(상점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	

- ※ 1) 1층 바닥면적의 50% 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.(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)
2)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” 적용

4) 전층 지정용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적용지역	전층 지정용도
기정	(a) 을지로5가 275-3일대주2)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(객실비율 80% 이상)
변경	(a) 을지로5가 275-3일대주2)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(객실비율 80% 이상)
	(b) 광희동1가 166 일원주3)	- 공동주택(주거복합) - 단, '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'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
- ※ 1)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‘전층’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(주차장 제외)의 70% 이상이어야 함
주2) 을지로5가 275-3일대(을지로5가 84-7, 275-4, 275-3, 275-19, 275-16, 275-10, 160-3, 160-2, 160-1, 141, 139-2, 139-1, 138, 137-2, 136, 136-2, 127-2, 127-1)
주3)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(광희동1가 163-2, 164-4, 165-2, 166, 168, 169, 170-1, 235-30)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비고
-	- 지정용도 변경 - 공동주택(주거복합)	-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를 변경함 -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에 한함(결정도 참조)

나.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1) 건폐율 결정조서

구분	적용지역	건폐율	비고
기정	전지역	60% 이하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 적용
	학교이적지	30% 이하	

2) 건폐율의 완화 결정조서

적용지역	완화범위	완화항목	완화내용	비고
청계천변 (평화시장 등)	80% 이하	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	20%	
구역 전체	80% 이하	역사·문화적자원 보전 시(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)	20%	현행 4m 미만 준용도로에 한하여, 구 심의를 통해 완화여부 결정
		공공시설부지 등 제공(기부채납)시	산식에 따름	
	이면부 80% 이하	1층 바닥면적의 50%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(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)(산식에 따라 적용)	10%	대지면적 300㎡ 이하에 한하여 5층 이하 부분만 완화
		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(바닥면적의 50%이상 설치) 모두 준수 시	10%	
	간선부 70% 이하	1층 바닥면적의 50%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(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)(산식에 따라 적용)	5%	
		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(바닥면적의 50%이상 설치) 모두 준수 시	5%	

- ※ 1)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완화 산식 = {(권장용도수용 면적비율 - 권장용도 수용기준)x1/2 }x0.6
2) 공공시설 부지 제공(기부채납)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용(단, 학교 이적지는 제외)
3)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” 적용
4)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(기부채납)에 따른 산식은 「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」 적용

다.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(변경)조서

1) 용적률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적용지역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비고
기정	전지역	500% 이하	600% 이하	법적 2배이하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
	학교이적지	400% 이하	500% 이하	법적 2배이하	
	중구 을지로5가 275-3번지 일대	500% 이하	690% 이하	법적 2배이하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%이하 적용
변경	전지역	500% 이하	600% 이하	법적 2배이하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
	학교이적지	400% 이하	500% 이하	법적 2배이하	
	중구 을지로5가 275-3번지 일대	500% 이하	690% 이하	법적 2배이하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%이하 적용
	광희동1가 166 일원주 ⁵⁾	기본용적률 : 600% 이하		794% 이하	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(결정도 참조)

※ 1) 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·도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

2)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” 적용

3) 을지로5가 275-3일대(을지로5가 84-7, 275-4, 275-3, 275-19, 275-16, 275-10, 160-3, 160-2, 160-1, 141, 139-2, 139-1, 138, 137-2, 136, 136-2, 127-2, 127-1)

4) 광희동 1가 166 일대의 상한용적률은 ‘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’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

주5) 광희동 1가 166 일대(광희동 1가 163-2, 164-4, 165-2, 166, 168, 169, 170-1, 235-30)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비고
-	기본 / 상한용적률 : 600% 이하 / 794% 이하	-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’ 적용 - 광희동1가 166 일원에 한함(결정도 참조)

2) 용적률의 완화 결정(변경)조서

(가) 허용용적률 : 변경없음

(나) 기본용적률 적용기준(의무사항)(신설)

사업조건항목	적용기준	계획내용	완화내용	비고
공공 기여율	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	기본공공기여율 - 부지면적의 8%이상(39.38㎡)	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: 39.38㎡(8.0%)	기본 용적률 600% 부여
건축물 용도구분	비주거 비율	10% 이상 ~ 20% 미만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비주거비율 (용적률기준) : 19.26%(752.62㎡)	
주택 건설 비중	주택규모	- 공공임대주택 : 전용 45㎡ 이하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: 전용 60㎡ 이하	- 주거 : 비주거 (용적률 기준) 3,074.99㎡ : 832.33㎡ (78.7%) : (21.3%) - 공공임대 : 공공지원민간임대 = 23세대(21.9%) : 82세대(78.1%) - 공공임대주택 - 전용 15.04㎡, 16.32㎡, 18.81㎡ 계획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- 전용 15.04㎡, 16.32㎡, 18.81㎡ 계획	
건축물 형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	- 다음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-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-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- 에너지 효율 건축물	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- 에너지 효율 건축물 - 친환경 건축물	

	주요정책	- 친환경 건축물		
주민공동 이용시설	커뮤니티 시설	•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㎡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	• 지상 5층 : 219.15㎡ 계획	

- ※ 1)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 2) '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' 3-2-2 준용
 3) 비주거비용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,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~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
 4)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
 부채납하여야 함

(다) 상한용적률(변경)

구분	적용지역	완화조건	산출방법
기정	전 지역	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	허용용적률 $\times(1+1.3\times\text{가중치}\times\alpha)$ 이내 ※ 가중치 =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※ α =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/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
변경	전 지역	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	허용용적률 $\times(1+1.3\times\text{가중치}\times\alpha)$ 이내 ※ 가중치 =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※ α =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/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
	광희동1가 166 일원 (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한함)	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하는 경우	증가되는 용적률의 50%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(세대수)을 산출 (단,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량 산출은 기본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산출함)

- ※ 1) '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' 3-2-2 준용

라. 건축물의 높이 결정(변경) 조서

1) 최고높이 결정조서

적용지역	최고높이	비고
창동단로변, 특별계획구역 (미공병단 부지, 국립중앙의료원 부지)	90m	
학교이적지 (케레스타)	70m	
기타 간선가로변	70m	
이면가로변	패션 도 · 소매 상가	
	10m이상 도로변	
	6m이상 도로변	
	6m미만 도로변	
	4m이하 도로변	
청계천로 변 (평화 · 신평화 · 동평화 · 청평화)	30m	
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(광희동1가 163-2, 164-4, 165-2, 166, 168, 169, 170-1, 235-30)	70m	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
- ※ 1) 대지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/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
 높이 적용(단,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둘
 레의 1/8미만 접한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)
 2)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
 3)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” 적용

마. 공공기여계획(신설)

구분	기본용적률	상한용적률	기본공공기여율	계획내용	비고
공공임대주택	600% 이하	794% 이하	부지면적의 8% 이상 : 39.38㎡	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8.27% (89.9㎡)	•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 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
- ※ 1) 공공기여율은 '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' 3-2-2 준용
 2) 공공임대주택은 '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' 및 '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
 립 및 운영기준' 에 따라 설치 제공함
 3)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합산함
 4)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
 부채납하여야 함

■ 결정(신설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비고
-	• 공공기여계획 신설 - 기부채납 :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'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'을 준용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

3.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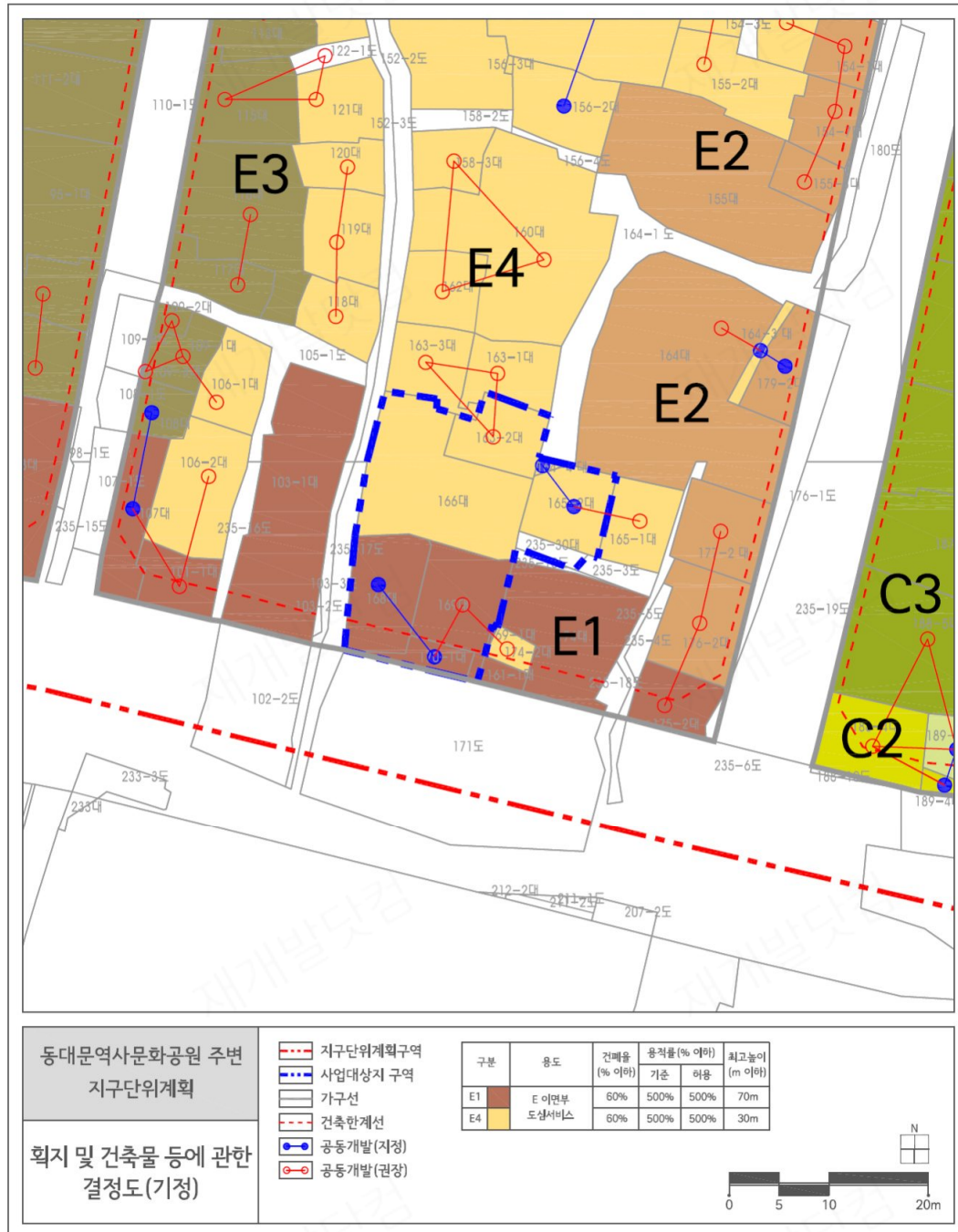
가.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차량출입 불허구간	기정 • 간선도로(장충단로, 동호로, 다산로, 을지로, 퇴계로, 청계천로)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- 동호로 일부구간(을지로5가 275-3)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•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	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『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』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
	변경 • 간선도로(장충단로, 동호로, 다산로, 을지로, 퇴계로, 청계천로)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- 동호로 일부구간(을지로5가 275-3)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•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• 광희동1가 166 일원 :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	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『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』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* 광희동 1가 166일원 결정도 참조
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	기정 • 『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승합자동차(버스)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』에 따라 주정차공간을 확보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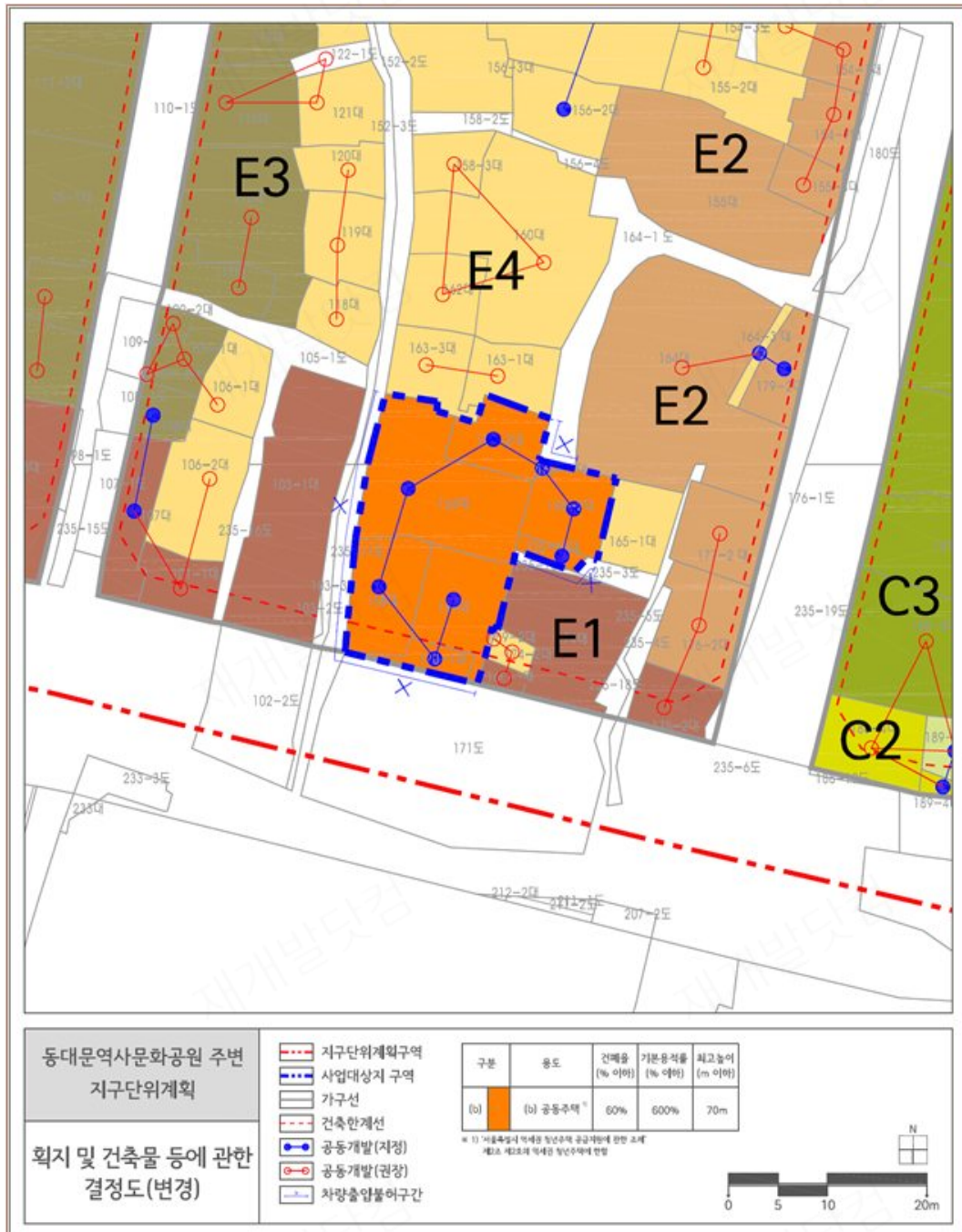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비고
-	•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- 광희동 1가 166 일원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자 함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

☐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IV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